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 서류접수기간

| 신청 방법 /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   | 당첨자 사전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은행 구분 없음</li> <li>당첨자 및 등·호 발표일 : <b>2021.10.21(목)</b></li> </ul> | <p><b>2021.10.22(금) ~ 2021.10.31(일) (10:00 ~ 16:00)</b></p> <p>당사 견본주택 : 강릉시 교동 30번지</p> |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 허용 (방문접수시간 : 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당첨자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 청약자격 및 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강릉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소형·저가 주택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함.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 ※ 경쟁시 강원도(기타지역)거주자보다 강릉시(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한다.

## □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09.30. 이후 발행분]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 서류  | 발급대상        |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  |             |  |
| 공동<br>서류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 까지로 설정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            | ○    |         | 청약통장소유 확인서   |             | • 인터넷 청약(청약 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 복구확인서  |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기타지역으로 가능)   |
|            | ○    |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증빙서류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  |
| ○          |      |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노부모<br>부양  | ○    |         | 노부모부양가점신청표   |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접수 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br>직계존속 | •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증빙용<br>※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br>※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 만 30세 미만인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br>직계비속 |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br>•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만 18세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  |
| 대리인<br>제출시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 위임장  |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            | ○    |         | 주민등록증, 인장  |             |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부적격        | ○    |         | 부적격 소명서류   | 본인          |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임  
 ※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이후 발행분에 한함  
 ※ 상기 서류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접수 및 계약이후라도 주택소유 등 당첨자격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및 관련사항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